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5일,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3.)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근의원)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대상 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법률의 제명 변경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여 보호를 넘어 동물의 복지까지 법률의 지향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의 대다수 규정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동물학대 방지, 구조·보호, 동물등록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동물복지법」이라는 제명이 법률 전체를 적절히 대표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제명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동물복지가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정책 확충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나. 재난 시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 마련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소유자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포함하려는 것임.

재난 대피 이후 동물의 보호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임시주거시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계 법률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함.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예외사유 법률 상향

개정안은 시행규칙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임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상 사유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일부 행위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예외사유를 법률에 한정할 경우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도 현행 조문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라.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고통 최소화

개정안은 동물 도살 시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 금지’ 대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불가피하게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관한 현행 제13조제3항을 삭제하면 규율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공포·스트레스’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고통 최소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위임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마. 동물의 미용 목적 외과적 수술 금지

개정안은 단미·단이 등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도 정당한 사유 없는 상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별도 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상 필요한 수술이 미용 목적 수술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의료·미용 외 목적의 수술에 대한 규율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항 분리와 적용대상 명확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함.

바. 등록대상동물의 정기적 갱신등록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등록정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에서도 소유자·주소 변경, 분실·사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과태료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도 추가적인 갱신의무 도입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임.

사. 동물사육금지명령·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개정안은 학대 발생 직후의 긴급격리, 재판 중 임시사육금지, 유죄판결 후 일정 기간 사육금지명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육금지명령은 대상 범위에 따라 동물 관련 직업 종사를 제한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수강명령 등 기존 재범방지수단과 비교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긴급격리조치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는 것은 신속한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보호조치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임시사육금지조치는 보호기간 종료 후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이 반환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나, 용어·인용조문 및 신청·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 맹견사육허가의 필수적 철회사유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반드시 철회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중상해’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고 경위나 귀책 정도와 관계없이 결과만으로 허가를 철회할 경우 해당 맹견의 인도적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 동물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개정안은 동물구조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문책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어 별도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용할 경우 면책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감사원 감사에도 적용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차. 동물생산업자·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금지 등

개정안은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종사를 금지하고, 미신고자의 보호시설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이른바 ‘신종펫샵’을 규제하려는 것임.

다만 일률적인 겸영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타인 명의 운영 등 우회 가능성도 있음. 또한 20마리 미만의 비영리 소규모

보호시설까지 명칭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분양 금지나 판매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덜 침해적인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만 허용되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민간동물보호시설에도 허용하려는 것임.

시설 운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를 민
간시설에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처리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수용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수리된 시설로 대상을 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타. 출입·검사 대상 축소 및 동물보호전문가의 점검 참여

개정안은 출입·검사 대상을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축소
하고, 점검 시 동물보호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동물실험기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반려동물 영업자 등도 행
정적 관리·감독을 위해 출입·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행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전문가 제도 신설의 필요성도 살펴볼 필
요가 있음.

파.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은 사육금지명령 위반, 미용 목적 외과수술, 갱신등록 의무 위반 등 새로 도입되는 의무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타당함.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인도적 처리와 관련한 벌칙조항에서 인용 조문이 실제 의무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하. 부칙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용 명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제도 변경에 대한 국민의 인지와 하위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의 시행유예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